주제 : 간도는 왜 우리 영토인가 ?

경영학과 21612340 정지현

목차 1.간도란 ?

 2.간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에 대한 근거

 1)간도의 역사

 2)백두산 정계비

 3)영유권 분쟁

4)간도협약

 3.결론 및 나의 생각

1. 간도

간도 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조선인 등 모두의 출입과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뜻으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 라고 칭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르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훈춘, 왕청, 연길, 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 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려면 우선 우리가 간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근거

1)간도의 역사

간도가 왜 우리 영토인가? 에 대해서 묻는 다면 그 첫번째의 근거로 간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간도의 역사만 살펴보아도 간도는 우리나라 영토였음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 그러다 고구려가 점차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고 한다. 그들은 ‘번호’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의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간도는 조선에서 **실질적인 행정 권력을 행사**하였다.

1900년대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주민에게 세금을 징수하였다.

간도에 대한 경비를 수행하였고 조선 관병들이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 이다.

간도는 산지가 발달하여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여 각종 자원이 풍부한 영토였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는 유목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간도에 정착하여 새로운 터전을 잡기 시작한 것이 철종~고종부터 였다.

세도정치의 포학하고 가혹한 정치와 농민들을 향한 수탈 등을 견디지 못한 대부분의 농민들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 뒤 1910년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손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터전이 필요했다. 하여 간도를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그해 1910년에서 1911년 까지 **간도로 이주한 사람은 약 2만 5천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하였으며,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인 간도로의 이주가 계속 되었다고 한다.

2) 백두산 정계비

간도의 역사를 통해 간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역사와 얼이 숨 쉬고 있는 공간임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근거로는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 말하고 싶다.

**백두산정계비**란 조선과 청국 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간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이다.

러시아와 일본 등 근처 각국의 나라들이 간도 일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의식한 청나라와 조선이 비석의 내용을 관찰하게 된다.

비문에는 ‘서위압록 동위토문’ 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을 분수령으로 경계선을 삼는다 라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석 내용의 ‘토문’ 이라는 내용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주 내륙의 송화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고,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묵극등이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였고,

따라서 백두산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해 놓았던 것**이고, 그렇게 합의한 내용 이였다.

또한, 묵극동의 주장에 의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역관이 백두산 도면 한 장을 요청하게 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때 그는 서슴없이 “백두산은 너희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느냐” 하고 건네 주었다고 한다. **백두산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어렵다.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비석의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읽으려 하였고, 그런 방식으로 영토를 얻고자 하는 방식은 절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09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남만주의 안동-봉천 간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역사는 살아 숨 쉬고 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토인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간도의 정치적 영유권 분쟁

그 다음으로는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 분쟁이 일어난 계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선 농민은 월경 농경을 하며, 주거를 두만강 이남 함경도에 두고 두만강을 넘어 내왕하였다. 그러나, 농촌 경제의 악화와 포학한 지방관의 악행이 날로 심해지면서 두만강 너머로 주거를 옮기게 된다. 조선 관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간도 깊숙히 생활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옮겨갔다.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 농민들을 다시 원래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이 날로 늘어갔다.

1881년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게 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 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먼저 이주하여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농민들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들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때도 **우리가 간도를 먼저 선점적으로 개간한 것**이다.

청나라와 조선이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봉금지역이 된 간도지역은 무주지로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지역이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해 영토 획득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먼저 삶의 터전으로써 자리를 잡고 살아온 것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영토이다.

-1882년 을유감계 회담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 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다.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조선 측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 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정보는 다시 토문감계를 요청함으로써 간도의 귀속문제는 양국간에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간도는 조선과 청나라 양국간의 귀속 문제였다. 하지만 일본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간도협약

마지막으로 간도 협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을사늑약) 상황에서 1909년,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간도협약은 우리 정보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 문제로부터 러시아를 밀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 분할 정책을 이용해 영국과 미국에게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우월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무력을 배경으로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해 이른바 보호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 처리를 위해 그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간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통감부는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간도 출장소의 설치는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였고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승인**하고 난 뒤의 행정 초처였다.

간도 파출소가 편찬한 “한청국경문제의 연혁”이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로서 두만강과는 관계가 없으며, 두만강이 결코 천연의 국경선일 수 없다고 여러 조항에 걸쳐 논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간도 출장소에 소장으로 취임한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齋藤季次郎)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성명** 했다.

일본은 간도가 우리나라 영유임을 인정은 하였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지배권이 미치는 땅을 보다 넓게 확보하고자 하였고, 한반도를 거점으로 만주에 세력을 침투시키는 첫 단계로 대륙 침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간도는 우리 영토이지만, 우리가 간여하지 않은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게 바로 “ 간도협약”이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간도 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이 협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 문서인 것이다.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에 근거해 조선을 대신하여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었지만, 을사늑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맺어진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이미 국제적으로도 무효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나라와 일본간에만 유효한 것이다. 무력으로 이루어진 협약이 절대 효력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유효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당사국으로써 배제된 우리나라에는 효력이 없다.

1952년 중국과 일본간의 평화조약에서 이미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되었고, 한국과 일본간에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제국주의 시기의 모든 조약과 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오직 간도협약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결론 및 나의 생각

 우리는 간도를 선점적을 먼저 개간 하였고, 간도에 대한 경비를 수행하였으며, 조선 관병들이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의 기회도 열어주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이다.

또한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였다. 우리의 선조들이 먼저 선점하여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있는 사실이다.

앞서 근거에도 말했듯이 백두산정계비, 간도 협약의 내용을 통해 간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간도협약은 불법적은 조약이며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간도협약 무효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한다.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 국제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외교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측에 통고하도록 해야한다.

간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삶의 터전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와 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영토 뿐만 아니라 간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을 중단시켜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왜곡, 말살하려는 작업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저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좌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대국민 영토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간도는 단순히 잃어버린 땅이 아니고 **잊혀지고 있는 땅**이다. 우리는 되찾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